

몰인몰 계약서

(주)비즈마켓(이하 “비즈마켓”이라 함)와 “TK트래블” (이하 “제휴사”이라 함)는 “제휴사”의 온라인사이트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비즈마켓”의 회원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제휴사”가 제작한 사이트를 “비즈마켓”이 운영하는 B2E사이트를 통하여 “비즈마켓”의 회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양사간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신뢰와 협조로써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상호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서비스" 라 함은 “비즈마켓”이 허용하는 위탁운영범위 내에서 “제휴사”가 제공하는 여행/티켓/외식상품권 등을 말한다.
- ② "복지포인트" 라 함은 “비즈마켓”이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고객사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상품 구매 또는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혜택이 인정되는 점수를 말한다.
- ③ "고객사" 라 함은 “비즈마켓”과 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이 유효한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계약대상

본 계약의 대상은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비즈마켓”과 “제휴사”의 합의에 따라 정한 서비스이며, “제휴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 갱신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제5조 계약내용

- ① “비즈마켓”은 “비즈마켓”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즈마켓”과 “제휴사”간의 시스템 연계(링크 방식 등)를 “제휴사”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 연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제휴사”는 상품의 구성, 문의 사항에 대한 응대 및 상담, 기타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추가적인 업무는 상호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 ③ “비즈마켓”은 “제휴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의된 관련 DB를 제공한다.
- ④ “제휴사”는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며, “제휴사”가 보유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즈마켓”의 네트워크 활용 시 상호 협의에 따른다.
- ⑤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클레임에 대하여 “제휴사”가 그 상담 및 처리를 전담한다. 만약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의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클레임을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⑥ “제휴사”는 원만한 서비스를 “비즈마켓”의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관련사용 방법 등 회원의 문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응대한다.
- ⑦ “비즈마켓”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제휴사”와 협의하여 공동 이벤트, 판촉활동을 지원하기로 한다.
- ⑧ “제휴사”는 신규 서비스 오픈시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하도록 하며, “비즈마켓”은 “제휴사”의 판촉 이벤트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단, 이벤트의 시기는 상호 협조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회원 DB 사용 및 지적재산권

- ① 회원의 DB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제휴사”가 활용할 수 있고,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또한 본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제공된 모든 DB는 파기 하기로 한다.
- ② “제휴사”가 “비즈마켓”의 인터넷사이트에 제공하는 HTML문서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은 “제휴사”에게 있다.
- ③ “제휴사”가 제공한 정보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비즈마켓”은 그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제휴사”의 정보를 “비즈마켓”이 수정,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7조 서비스 질적 보장

- ① “제휴사”는 “비즈마켓”의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 시 “비즈마켓”의 회원에게는 정가 대비 할인된 가격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단, 우대할인혜택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호통보 후 협의하여 조정한다.
- ② “제휴사”는 서비스 내용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지적재산권 포함), 사회윤리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나 사실과 상이한 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문제 해결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③ “제휴사”는 서비스 내용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제휴사”의 본 조항의 의무 위반으로 “비즈마켓”이 민·형사상의 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 “제휴사”는 이로 인하여 “비즈마켓”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의를 다하여 “비즈마켓”을 면책시킨다.

제8조 판매수수료

“제휴사”의 서비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하며, 판매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호통보 후 합의하여 조정한다.

서비스내용 : 여행대장(www.tourboss.co.kr)에서 운영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단, 해외여행 패키지 제외

판매수수료 : 3% (vat포함)

계약관리번호 : CN482200021721-0 / 전자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은 www.unipost.co.kr 에서 확인



제 9 조 정산 및 대금지급

- ① 본조에 따른 “비즈마켓”과 “제휴사”의 대금정산 및 지급은 “고객사” 임직원이 결제한 총 판매금액에서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환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비즈마켓”과 “제휴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고객사” 임직원이 결제한 “총 판매금액” 정산한 금액을 익월 5일까지 확정하여 정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비즈마켓”은 청구받은 금액을 익월 말일까지 “제휴사”가 지정하는 통장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 ③ “비즈마켓”은 “제휴사”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총판매금액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익월 5일까지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제휴사”는 청구받은 금액을 익월 말일까지 “비즈마켓”이 지정하는 통장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 ④ “비즈마켓”은 “제휴사”와 협의를 통하여 “제휴사”에게 본 조 ②항의 대금을 지급 시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본 계약 기간 중 또는 본 계약 종료 후 “비즈마켓”과 “제휴사”는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얻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단, 법령 또는 국가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 ① 본 계약의 “비즈마켓”과 “제휴사”(이하 “각 당사자”라 한다)가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각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의 “각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즉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 회의, 회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주요 자산 또는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
 5. 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6. 본 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관계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금전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부도가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원활한 계약 실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합의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해지 이전에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손해배상

- ①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제소, 기타 관공서로부터의 행정조치에 대해 “제휴사”는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이로 인한 “비즈마켓”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한다. 단, “비즈마켓”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도 본문을 준용한다.
- ③ 일방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판매 기회손실 및 이미지 손상은 전적으로 귀책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상거래 관계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지급한다.
- ④ 본조 제3항의 방법은 “비즈마켓”과 “제휴사”의 별도 합의에 처리한다.

제13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 이전에 체결된 당사자간의 계약은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본 계약에 갈음하며, 이전 계약 내용은 본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를 변경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즈마켓”과 “제휴사”의 서면 합의로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15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6조 관할 법원

“비즈마켓”과 “제휴사”는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조 보칙

- ①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각 상대방에게 서면과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호의 변경
 2. 폐업, 업종변경, 회사합병 등의 결정
 3. 각 당사자의 사업장 신규모집, 변경, 이전, 폐쇄
 4. 각 당사자의 사업장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변경
 5. 제6조 단서 소정의 사유
 6. 기타 본 계약의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③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본 계약의 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비즈마켓”과 “제휴사”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1월 07일

"비즈마켓"

상 호 : (주)비즈마켓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5(원효로3가) 2층
대 표 자 : 허탁 (인)

"제휴사"

상 호 : TK트래블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39 (이문동)명경빌딩 5F TK트래블
대 표 자 : 강일구 (인)